



제399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행위 금지 완화〉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645호)
- 유경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941호)

2022. 8.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옥 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윤건영의원안】	1
【유경준의원안】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윤건영의원안】	1
【유경준의원안】	3
III . 검토의견	4
1. 사회복지요원의 정치행위 금지 완화	4
IV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윤건영의원안】

- 1) 발 의 자 : 윤건영 · 고민정 · 김남국 · 김영호 · 김희재 · 문정복 ·
오영환 · 윤영찬 · 최인호 · 최종윤 · 한병도 의원(11인)
- 2) 발의연월일 : 2022. 2. 3.
- 3) 회부연월일 : 2022. 2. 4.

【유경준의원안】

- 1) 발 의 자 : 유경준 · 권명호 · 추경호 · 김태호 · 김 용 · 김승수 ·
태영호 · 김용판 · 조명희 · 황보승희 · 이 영 의원(11인)
- 2) 발의연월일 : 2022. 3. 23.
- 3) 회부연월일 : 2022.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건영의원안】

지난해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회복지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33조제2항 중 제2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음.

헌법재판소는 현행 ‘그 밖의 정치단체’에 대해 어떤 단체가 정치단체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해당 표현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함.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 역시 개념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다만, 사회복지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근무시간 내로 한정하여 금지한다면 정치적 중립과 업무전념성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같이 사회복지요원의 ① 근무시간 내의 정치적 행위만을 제한하고, 근무시간 외의 정치적 행위가 복무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고 ②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는 2020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준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경준의원안】

현행 병역법 제33조제2항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제33조제2항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따라 위헌결정을 내림(헌재 2021. 11. 25. 2019헌마534).

이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사회복지요원의 정치행위 금지 완화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안(이하 “윤건영의원안”)은 사회복지요원이 복무중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요원이 할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구체화하되, 근무시간 중으로 한정하여 금지하려는 것이고,

유경준의원 대표발의안(이하 “유경준의원안”)은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하여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려는 것임.

[표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윤건영의원안	유경준의원안
제33조(사회복지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33조(사회복지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33조(사회복지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	② ----- ----- ----- ----- ----- -----	② ----- ----- ----- ----- ----- -----

현행	윤건영의원안	유정준의원안
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u>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u> <u><신설></u>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정치단체(「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한-----</u> <u>2의2. 근무시간 중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u> <u>가.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u> <u>나. 서명운동을</u>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정당에 가입한 경우</u>

현행	윤건영의원안	유경준의원안
	<u>기도(企圖)·주재</u> <u>(主宰)하거나</u> <u>권유하는 것</u> <u>다. 문서나 도서를</u> <u>공공시설 등에</u> <u>게시하거나 게시</u> <u>하게 하는 것</u> <u>라. 기부금을 모집</u> <u>또는 모집하게</u> <u>하는 것</u> <u>마. 다른 사람에게</u> <u>정치단체에 가입</u> <u>하게 하거나</u> <u>가입하지 아니</u> <u>하도록 권유 운동</u> <u>을 하는 것</u>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89조의3(사회복무 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제89조의3(사회복무 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 ----- -----	

현행	윤건영의원안	유경준의원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생략) 2. <u>제33조제2항제1호</u>부터 <u>제3호</u>까지, <u>제3호의2</u>, <u>제4호</u>, <u>제33조의10제2항제1호</u>부터 <u>제5호</u>까지, <u>제7호</u>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u>제24조제2항제1호</u>부터 <u>제4호</u>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 4. (생략)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33조제2항제1호</u>, <u>제2호</u>, <u>제2호의2</u>, <u>제3호</u>----- ----- ----- ----- ----- ----- ----- ----- ----- ----- ----- 3. 4.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3조제2항제2호¹⁾는 사회복지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고, 횡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법 제89조의3제2호²⁾는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33조제2항제2호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³⁾을 선고하였음.

이에 개정안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먼저,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윤건영의원안은,

-
- 1)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② 사회복지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횡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이하 생략)
- 2) 「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지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3) 헌재 2021. 11. 25.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⁴⁾에 따른 정치단체, 즉 정당 및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구체화하고 있음.

참고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920호, 2020. 12. 24. 정부제출)」은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920호)의 의결 전제

현행	개정안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정치단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3.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5.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그 선거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다른 사람—— 정치단체——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 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임.

이와 같은 취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963호)⁵⁾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924호)⁶⁾이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유경준의원안은, 정당 외의 정치단체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963호)

제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를 “정치단체”로 한다.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정치단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3.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5.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선거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924호)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정당”을 “특정 정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를 “정치단체”로 한다.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정치단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3.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5.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선거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사회복무요원은 비록 군인은 아니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자인 동시에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⁷⁾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⁸⁾는 보충역은 군인에 준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경준의원안과 같이 정당 외 “정치단체”와 관련된 부분을 전부 삭제할 경우에는 정치단체 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므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정치단체의 구체적 범위는 입법의 통일성 측면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등의 심사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7)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의 이행자인 동시에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 사람으로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에 가입할 경우,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 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나아가 정당활동으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의 일종으로서 현역과 달리 군이 아닌 민간에서 근무하지만, 보충역 역시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헌재 2010.11.25. 2006헌마328 참조)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허용할지 여부는 현역 등 다른 방식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헌재 2021. 11. 25. 2019헌마534)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3. 군무원

윤건영의원안은, 정치단체 가입 이외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2항⁹⁾의 정치 운동 금지 내용과 동일·유사하게¹⁰⁾ 하여 입법의 체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되,

“근무시간 중”에만 한정하여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근무시간 외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낮다고 보고 “근무시간 외”에도 금지할 경우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의 이행자인 동시에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 사람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인 및 공무원과 달리 근무시간을 구분하여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9)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10) 개정안과 다르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2항제4호는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행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4항에서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병역법」 제33조의10제2항¹¹⁾에서도 예술·체육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고, 횡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9조의3제2호¹²⁾는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맞추어 해당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참고로, 윤건영의원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와 병무청은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근무시간 중’에 한하여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업무 전념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근무시간을 구분하여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1) 「병역법」 제33조의10(예술·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②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횡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12) 「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IV. 참고자료

1. 사회복지요원 중 정치행위 위반자 현황

(’21. 12. 31. 현재, 명)

계	’19년	’20년	’21년
9	1	1	7

2. 개정안 내용의 정치단체 관련 조문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28조(강령 등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의 처

02) 6788-5310